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66 | 2024.12.23 (2024.12.16~12.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6~12.2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등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과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접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권영진의원 등 13인)」,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등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교육위>, <과방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헌법재판관 3인과 대법관 1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확정·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확정·발표(기획재정부) 9
-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발표(국토교통부).....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13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33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2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2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5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2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7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8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9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3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3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3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32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3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 등 11인)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34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3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3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3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3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권영진의원 등 13인)	3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	3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3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6~12.22) [바로가기](#)

- [금융]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중국]** 트럼프 재선 성공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노동]**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5 (2024년 12월 3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확정·발표 -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청사진 마련 - 경제적 파급효과 59조원, 기술자립화율 80→90%, 사업화율 42→50%	2024-12-18
---------	---	------------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하였음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
-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
-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②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

- 기후변화·전기화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
-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

③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구조로 전환

- 차세대 전동기 등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의 초고효율화를 추진
- 업종별, 건물별 특성에 맞춘 수요관리 기술 및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달성
- 수소 모빌리티 적용처 확대와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의 대체연료를 개발하여 비배터리 수송 분야의 연료전환을 지원

④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

-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도전혁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선으로 시장병목을 해소하여

연구개발(R&D) 성과의 확산을 지원

- 안전시험 검증센터를 통해 실증·사업화 단계의 안전성을 제고
- 최정상급 융합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

기획재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확정·발표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연내 산단계획 승인 위해 3개월 행정절차 단축
- LNG 허브터미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충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 추가
- 이차전지 산단 용수 적기 공급 위해 용수 확보방안 마련 및 용수시설 준공시기 1년 단축
- 환경영향평가 개선, 기후대응기금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등 규제·제도 개선도 병행

2024-12-18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

*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4조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5조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
-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5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②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
-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
-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
-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

- 100대 첨단소재 기술 자립화 및 100대 미래소재 조기 선점 전략, 첨단소재의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인공지능 기반 소재 연구 혁신 방안 등
- 과기정통부, 세계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동력원인 첨단소재 투자를 확대 해나갈 것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힘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100대 미래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이원화(Two-Track)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

-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
-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

②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 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

-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매칭) 고도화, 규모 확대(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

-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산 확보 지원, 부처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과정도 개선

③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

-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국제 젊은 과학자 연결<글로벌 영커넥트>)을 추진한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발표

- 10년간 3,6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계획
- 민간 제안 통한 즉시 상용화도 추진

2024-12-16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발표하였음.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

-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기술개발을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

② 3D 자동생산 기술

-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
- 3차원 데이터 자동 생산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으로는 도시계획 담당자가 갱신된 3D 데이터를 즉시 확인하여 도로 확장이나 도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

③ AI 기반 암호화 기술

-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암호화 기술을 개발

④ 차세대 플랫폼 구현

-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 기존에는 정해진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술개발 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는 차세대 대화형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

⑤ 입체격자체계

- 기존의 2차원 중심의 위치기준체계를 넘어 지상, 지하, 실내, 공중까지 아우르는 3차원 체계로 공간적 범위가 확장
-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제안형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후 즉시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를 위해 자율주행, 로봇물류,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스마트 빌딩, 건설안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며 위성 등 각종 장비 및 부품 개발, 기술 활용처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기반 마련 등 각 분야에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공동 기술 개발 및 성과물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7 시행

투자비 보전 및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유형에 역세권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 금전 채무의 신용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7 시행
-----------	---------------	---------------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다중차폐시설을 갖추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중전에는 다중차폐시설로 인정되는 건물을 창문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물까지 확대**하여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5-06-21 시행 예정
-----	--------------------------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중전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5-12-21 시행 예정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 ②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제7조)
- ③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 ⑥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2-19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동반복귀기업 또는 협력형 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매출액 등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협력형 복귀기업의 선정 신청 시점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할 때'로 한정하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6-21 시행 예정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지분을 및 현물출자 비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공동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연합 또는 공동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7 시행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 확대 (제2조제18호다목 신설)

-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함

②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추가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신설)

-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공정의 단계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지하층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를 추가함

③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 (제32조제3항 신설)

-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01 시행 예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7 시행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2-17 시행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는 자 등은 반품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반품 또는 하자에 관한 내용을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반품 또는 하자 관련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반품 또는 하자 관련 내용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반품 또는 하자 관련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시험·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6. ~2025.01.27.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 ②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안 제34조의 6)
- ③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 ④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안 제34조의 7)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전화: 044-202-6155\)](tel:044-202-615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8. ~2025.01.27.
---------	--------------------	-----------------------------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인해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확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 (현행 제4조 개정)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에

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도 적용 불가

② 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 (현행 제3조 개정)

-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23, 팩스: 044-204-7849\)](tel:044-204-7823)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20.
~2025.01.31.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1→5년)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3→4년)하고,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감측사업 지원업무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 삭제

-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2조)
- 국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②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신설

- 탄녹위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정책제안플랫폼 등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③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 조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

④ 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 확대(3→4년)(안 제57조)

⑤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보완

-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 및 제57조)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위임근거(국립환경과학원) 마련(안 제73조)
- 그린카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위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안 제74조)
-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관련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 지정(안 제74조)
- 국제감측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74조)

※ 문의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 (전화: 044-201-6652, 팩스: 044-201-665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2.18.
~2025.01.15.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3조의3 및 별표 2)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84, 팩스: 043-719-375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12-18 발의
---------	-------------------------	---------------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안 제397조의2)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33인)	2024-12-18 발의
---------	----------------------------	---------------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안 제19조제6호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12-17 발의
-------	---	---------------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

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2024-12-17 발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12-19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2조 등)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12-19 발의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되어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음

반면 주요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하여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12-19 제출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신용등급제공급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 (안 제5조제3항)

-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②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 (안 제6조의2 신설)

-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 (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④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 정비 (안 제42조의2제7항)

-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12-18 발의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04조의15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024-12-20 발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9조의 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12-16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024-12-18 발의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알뜰폰)가 도입되었음. 알뜰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입('20년 45개→'24년 57개)했고 알뜰폰 이용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휴대폰 가입자 기준 '20년 약 610만 회선→'24년 8월 약 942만 회선)해오고 있음. 특히, '24년 8월 기준 전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의 16.5%가 알뜰폰을 이용하는 등 저렴한 요금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통신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임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동통신사(도매제공사업자)의 계열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가 아닌 알뜰폰사(독립계 알뜰폰사)들의 경쟁력이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임

이에, 중소기업자들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계 대·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들과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또는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3 신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25년 3월 29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정부의 사후 검토 방식으로 바뀔 예정임.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 환경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 고착 상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현저한 협상력 차이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원하고자 함 (안 제38조의2 제4항,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 삭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2024-12-20 발의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2024-12-20 발의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첨단기술 육성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의 방산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방위산업 전략기술의 지정 및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전략기술로 정의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중국 또한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와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자국의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민간분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서 5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4대 분야에서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특화단지 지정,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임

그러나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관련 법령이 부재하여 전략기술 지정을 과기부나 산자부에 의뢰하고 있으나, 방산 전략기술은 민간 분야가 아닌 국방 분야이므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방산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 제8조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12-18 발의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9조의5제1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12-18 발의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12-16 발의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 44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4-12-17 발의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 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12-17 발의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와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2024-12-18 발의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논의되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자원 등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지난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12-19 발의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접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4-12-16 발의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12-17 발의

정부는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야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조제8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12-18 발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2024-12-18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및 제26조)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등 22인)

2024-12-18 발의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하청·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 등 11인)

2024-12-19 발의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12-16 발의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2024-12-16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2024-12-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

2024-12-17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9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등 12인)

2024-12-17 발의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024-12-17 발의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권영진의원 등 13인)

2024-12-12 발의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 19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

2024-12-19 발의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봇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의 건설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2024-12-19 발의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12-20 발의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8조, 제9조의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12/23(월) 14:00	- 안건 미정
법사위	전체회의	12/24(화) 10:00	- 법안 심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23(월) 14:00	- 법안 심사
과방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12/26(목) 15: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12/27(금) 10:00	- 법안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	12/23(월) 10:00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지방세관계법 의결, 현안 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12/23(월) 15:30	- 법안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12/23(월) 10:00	- 법안 의결 및 상정, 증인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현안 보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12/23(월) 10:00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12/26(목) 10:00	-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23(월) 10:00	계엄 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 회의실
	12/23(월) 10:0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등	aT센터 창조룸 II
	12/23(월) 14:00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 회의실
	12/24(화) 07:30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	이병진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 회의실
	12/27(금) 10:00	2024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김선교·김형동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자료집 등	12/23(월)	「팩트북」제113호(2024-5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4(화)	「금주의 서평」제709호(2024-50호) 발간		
	12/23(월)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2/26(목)	「NABO Focus」제85호 발간		
	12/24(화)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NARS 입법정책)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12/26(목)	‘트럼프 2기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의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이슈와 논점) 발간		
	12/23(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17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16(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4.11호)	국회도서관	
	12/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63호(2024-25호)		
	12/18(수)	「THE 현안」제38호(2024-38호)		
	12/18(수)	「금주의 서평」제708호(2024-49호)		
	12/19(목)	「NABO Focus」제83호	국회예산정책처	
	12/20(금)	「예산정책연구」제13권 제4호		
	12/16(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2/16(월)	2024년 미국 대통령·의회선거 분석(NARS 현안분석)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6~12.2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17(화)	금융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례
12/17(화)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12/18(수)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12/18(수)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2/19(목)	중국	트럼프 재선 성공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2/19(목)	노동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20(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5 (2024년 12월 3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